(사)한국연극협회 선거관리규정

2000. 11. 11 개정
2005. 01. 08 개정
2012. 12. 24 일부개정
2015. 11. 28 일부개정
2018. 12. 05 일부개정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한국연극협회(이하 '본 협회'라 한다) 정관 제 11조에 규정된 임원 선거업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한다. 아울러 본 규정은 민주적이고 공정한 임원선거를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) 본 협회 임원의 선출은 정관이 정하는 이외에는 본 규정에 의한다.

제3조(구성) 본 협회이사회는 본 협회원 10인 이내를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한다. 아울러 후보등록 후 각 후보자 측에서 추천하는 자를 1인씩 포함한다. 이 경우, 이를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.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
제4조(시행)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에 부응하는 시행세칙을 본 협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새로이 만들 수 있다.

제5조(후보등록)
① 이사장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본 협회 사무국에 소정의 등록절차를 필해야 한다. **후보등록마감은 선거일 1개월 전으로 하고, 최소한 등록마감 20일 전까지**는 각 지회, 지부에 우편으로, 그리고 월간 한국연극지 및 본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. **[2012. 12. 24 개정]**
② ~~이사장후보자는 부이사장후보 3인과 한 조로 등록하여야하며 투표 역시 한 조가 되어 일괄 투표한다. 단, 이사장 후보등록 시에 한 조로 등록한 부이사장후보는 등록을 변경할 수 없다.~~ **[2015. 11. 28 삭제개정]**
③ 후보등록구비서류는 후보등록서(소정양식), 후보추천서(소정양식),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로 한다.

제6조(선거운동기간) 선거운동기간은 후보등록마감일부터 총회 전날까지로 한다.

제7조(대의원) ① 각 지회장은 정관에 규정된 대의원 명단을 정해진 날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하며, 만약 마감일까지 등록하지 않을 시에는 기권으로 간주하여 정족수에서 제외한다.
② 대의원 명단은 대의원 등록 마감 다음 날 공개한다.
③ 회비(총회개최 전년도 분까지)를 미납하거나 징계중인 자, 임원개선총회 개최 전년도 8월 말일 이후 입회승인을 받은 자는 대의원 자격을 가질 수 없고 총회 정족수에서 제외한다.
④ 본 협회정관 제12조에 의거, 대의원등록 마감 후 새로이 선출된 본 협회의 직능별 추천이사와 당연직이사를 제외하곤 등록된 대의원은 등록을 변경할 수 없다.
⑤ 본 협회정관 제19조 2항에 의거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지회총회에서 정하여 선출하되 임원 및 산하단체 대표, 또는 대표가 지명한 단원을 우선 배정토록 한다.

제8조 (의무)
① 후보자와 대의원은 선거관리규정과 시행세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경고,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② 이사장 후보 등록시에는 선거 공탁금 10,000,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금액은 선거관리 위원회의 내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 수당 및 회의비와 홍보물을 인쇄비 및 우편통신비를 포함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등 임원 선거사무에 사용하고 잔액 발생시에는 본 협회 사무국 운영비로 편입한다. [2021.12.25. **일부개정]**

부 칙 (2000. 11. 11.)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본 협회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5. 01. 08.)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본 협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2. 12. 24)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본 협회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5. 11. 28)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본 협회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8. 12. 05)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본 협회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1. 12. 25)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본 협회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